선박과 공사 해역부근을 항행하는 일반 항행선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5.2 갑판에서의 안전

- (1) 계단, 출입구 등 이동통로와 작업장 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고, 장비나 자재를 쌓아 놓지 않아야 한다.
- (2) 누수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,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견고한 방법으로 자재를 적재하여야 한다.
- (4)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에는 경광등을 작동시켜야 한다.
- (5) 야간에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호스나 파이프, 밸브에서 누수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- (7) 미끄러운 갑판 바닥은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해서는 안 된다.
- (8) 필요시 동결 부분은 해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9) 전도나 추락 위험 장소의 경계부분에 대조되는 색깔로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.
- (10) 바지선위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-58-2012(사다리 안전작업 지침)에 따른다.

5.3 바지선의 수상 안전조치 사항

- (1) 바지선 갑판이나 작업장 끝단에 안전난간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이동하거나 작업 중에 구명복 또는 부양조끼 등 개인 부양장치(PFD, Personal Flotation Device)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- (2) 바지선에 구명복 및 개인부양장치 등 개인용 보호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